

★ ◎

감사 방침 제30호

문서번호	기술감사부-519
보존기간	10년
결재일자	2016.03.11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아님

부 원	기술감사부장	감사실장	감사	
			03/11	
박정수	백경희	김광석	김현식	
협 조				

##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지침 정비

서울특별시 SH공사  
(감사실 기술감사부)

#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지침 정비

현재 공사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「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」의 운영지침을 서울시의 ‘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처리요령’ 개선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

## I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

- 2011.02.17. : 하도급부조리근절 종합대책(시장 방침 제64호)
  - 공사·공단, 자치구의 감사부서 및 하도급개선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
- 2011.03.08. :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(안)(시장 방침 제184호)
  -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하도급 관련대책 시행
- 2016.03.08. : 『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』 처리에 대한 신고요령 개선사항 알림
  - 신고 민원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 안내, 처리 절차 및 체계 세분화 등 처리요령 개선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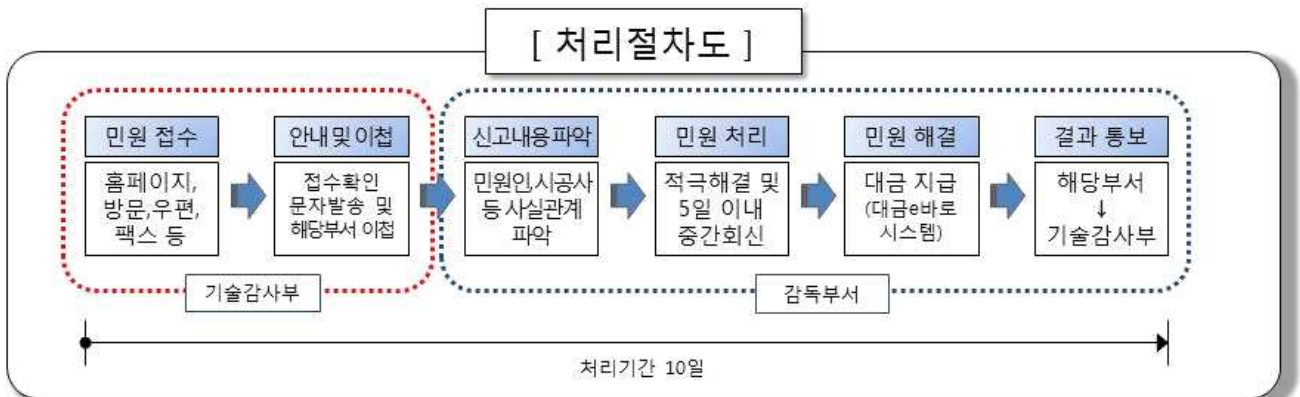
## II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

- 최근 5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

연도별	접수구분	신고 유형별 건수				
		계	하도급대금	임금	장비·자재	기타
2015년	소계	42	2	22	17	1
	자체 접수	4	1	1	2	0
	서울시등 타 기관	38	1	21	15	1
2014년	소계	35	1	17	13	4
	자체 접수	7	0	1	2	4
	서울시등 타 기관	28	1	16	11	0
2013년	소계	42	5	21	16	0
	자체 접수	4	3	0	1	0
	서울시등 타 기관	38	2	21	15	0
2012년	소계	53	5	9	36	3
	자체 접수	9	1	2	6	0
	서울시등 타 기관	44	4	7	30	3
2011년	소계	44	7	11	25	1
	자체 접수	11	6	4	1	0
	서울시등 타 기관	33	1	7	24	1
계	소계	251	21	97	120	13
	자체 접수	42	11	9	14	8
	서울시등 타 기관	209	10	88	106	5

※ 2016.03 현재 3건 접수, 2건 해결 및 1건 종결

### Ⅲ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지침 정비



#### 1. 민원 접수

##### 가. 접수대상 공사

- 우리 공사 발주 시설공사
- 불법·불공정 하도급 행위, 각종 대금·임금 체불 등
- 거래 종료(준공, 납품 등)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

##### 나. 접수 방법

- 접수처 : SH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[감사실 기술감사부]
- 접수방법
  - (1) 붙임 1호 서식에 의한 방문, 우편, 팩스, 전화 접수
    - ※ 전화 접수의 경우 증거자료 없이 확인 가능한 사안에 한함
  - (2) 홈페이지 접수 (SH신문고 - 하도급 부조리신고)
  - (3) 서울시 등 타 기관 이첩민원 접수
- 접수 대상이 아닌 사항 : 우리 공사 발주공사 외 타 기관, 민간 건설공사 등
  - ☞ 즉시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민원인에게도 이첩 내용을 통지
    - ▶ 국토교통부(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1577-8221),
    - ▶ 고용노동부(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),
    - ▶ 공정거래위원회(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상담 044-200-4010)

##### 다. 처리 요령(이첩)

- 신고 즉시 접수대장에 기록 후 해당부서에 이첩
- 민원인에 대한 접수 확인 문자 전송 : 처리예정일자, 처리부서 등

## 2. 민원 처리 절차

### 가. 처리 주체

- 해당 감독 부서
- 필요시 기술감사부 조사 실시
  - ▶ 다수인, 반복, 고액체불, 장기 미해결 민원 등

### 나. 처리 기한 : 10일 (초일 산입, 공휴일 불산입)

- 5일 이내 중간처리 상황 민원인에게 문자, 유선 안내
- 처리기간 연장 : 증빙자료, 현장 확인, 증재·조정 등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시 부서장 결재 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  - ※ 처리 기한 내 처리 완료를 원칙으로 하되, 민원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종결하지 않고 지속 관리하여 해결 도모

### 다. 처리 절차

#### (1) 접수 및 이첩

-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(기술감사부) → 처리부서

#### (2) 신고내용 파악

- 체불 민원에 대한 신고인 인적사항, 내용 등 체불 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검토

#### (3) 민원상황 안내 및 민원처리

- 관계자 대책 회의 등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
  - ▶ 초기 단계부터 발주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급인, 하수급인 등 이해 당사자가 『민·관 관계자 대책회의』를 개최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
- 5일 이내 중간 상황과 향후 진행 절차를 안내
  - ▶ 처리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상황 설명
- 체불의 근본 원인과 불법·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·시정하여 유사민원 재발 방지

#### (4) 대금 지급 등 민원 해결

- 대금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「대금e바로시스템」 이용
  - ※ 선지급기능 등 활용(대금e바로 고객센터 : 1800-8650)

#### (5) 결과 통보

- 민원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기술감사부로 처리결과 제출
  - ▶ 결과보고서, 이체증(대금e바로시스템 등), 합의서 등

※ 당사자 간 지급 합의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추가제출

## 라. 처리 요령

- (1) 신속한 민원 해결을 최우선 원칙
  -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법·부당행위 발견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
- (2) 직접지급 제도 활용
  - 하도급 대금, 장비·자재 대금 체불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5조에 의한 직접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
- (3) 체불 업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
  - 건설장비 및 건설부품 제작업자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하수급인 지위를 가지므로 대금 체불시 행정처분 가능
  - 임금 체불은 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 내지 제44조의3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직접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체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
  - 피신고인이 대금 미지급 등 민원해결 의지가 없거나 소극적인 경우 가능한 행정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민원해결 유도
- (4) 건설업자 부도 등에 따른 대응
  - 원·하도급사 부도 등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시 신속히 즉시 체불 현황 조사와 함께 『민·관 관계자 대책회의』를 개최하여 처리방안 협의
    - ▶ 미지급 기성금이 있는 경우 제3자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보다 당해공사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방안 강구
    - ▶ 임금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8조에 따라 압류 금지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등에 관계없이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우선 해결

## 마. 처리 구분

- (1) 해결 완료
  - 지급 완료 등 신고인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된 경우
  - 당사자 간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신고인과 완전히 동의한 경우
- (2) 처리 종결
  - 당사자 연락 두절, 부도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    - ⇒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, 고발 등의 조치
  -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 - 신고취하, 타 기관 이송,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
  - 기타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에 적용되지 않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조정·합의 노력에도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

## IV 하도급 부조리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### 1. 위법사항 조치

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주요 위반 사항 조치

- 처분기관

- ▶ 행정처분 : 종합건설업 ➔ 특별(광역시·도, 전문건설업 ➔ 시·군·구
- ▶ 관계자 고발조치 : 관할 경찰서

- 불법·불공정 주요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

관련규정	주요내용	위반시 처분기준
건산법 제9조 (건설업 등록 등)	-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함	
건산법 제21조 (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알선금지)	-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,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의 수급, 시공 및 등록증(등록수첩)을 대여 하거나 알선금지	건산법 제96조(벌칙) ▪ 징역 3년, 벌금 3천만원
건산법 제16조 (건설공사의 시공자격)	-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등록하여야 함 -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에 등록하여야 함	건산법 제81조(시정명령) 건산법 제82조(영업정지 등) ▪ 영업정지 1년, 하도급 금액의 30% 과징금
건산법 제25조 (수급인 등의 자격제한)	-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	건산법 제82조(영업정지 등) ▪ 영업정지 1년, 하도급 금액의 30% 과징금
건산법 제29조 (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)	-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 -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-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금지	건산법 제96조(벌칙) ▪ 징역 3년, 벌금 3천만원
건산법 제29조의2 (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)	-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관리	건산법 제99조(과태료) ▪ 과태료 500만원부과
건산법 제34조 (하도급대금지급 등)	- 준공금, 기성금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-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<b>※ 자재납품, 장비대여업자는 하수급인의 지위 의무</b>	
건산법 제36조 (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)	-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 증액하여 지급	건산법 제81조(시정명령) 건산법 제82조(영업정지 등) ▪ 영업정지 6개월, 과징금 1억원
건산법 제38조 (불공정행위)	-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강요 금지 -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	
건산법 제68조의3 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)	- 수급인,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에게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	건산법 제82조(영업정지 등) ▪ 영업정지 1년, 하도급 금액의 30% 과징금
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(건설기계 임대차계약)	-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	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(과태료) ▪ 과태료 300만원
근로기준법 제43조 (임금지급)	-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	근로기준법 제109조(벌칙) ▪ 3년 이하 징역, 벌금 2천만원

- 나.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 ➡ 공정거래위원회 이첩
-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적용대상이면서
 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2조 제2항(계약서의 작성·보관), 제34조(하도급대금 지급), 제36조 제1항(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), 제37조(검사 및 인도), 제38조(불공정 행위의 금지) 위반사항
- ※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「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」
- 다. 「지방계약법」 위반 ➡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
- 일괄하도급, 및 재하도급 금지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
  - 발주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
  -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
  -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라. 「근로기준법」 위반 ➡ 고용노동부 이첩
-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미지급(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)

## 2. 필요시 무료 법률상담 안내

- 가.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
- 방문상담: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3층  
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(02-2133-3600)
  - 온라인접수: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([homin@seoul.go.kr](mailto:homin@seoul.go.kr))에 신청
- 나.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
- 방문상담: 국번 없이 120번 예약 후 방문
  - 사이버상담: 서울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신청
- 다. 대한법률구조공단
- 전화상담: 국번 없이 132
  - 사이버 상담(<http://www.klac.or.kr>)
- 라. 기타 기관, 상담창구 등 : 붙임 4참조

붙임 1







## 하도급 부조리 신고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

기 관 명		전화번호	비고
공 정 거 래 위 원 회	불공정, 하도급 신고 및 상담	044-200-4010	
	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	1588-1490	
국 토 교 통 부	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(LH, 민간 등)	1577-8221	
고 용 노 동 부	민간 임금체불신고 등	1350	
대한전문건설협회(서울시회)	불법하도급신고	02-3284-0600	
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	무료 법률자문	132	
서 울 시	안전감사담당관 (하도급감사팀)	공사비,노임,장비 등 체불 관련업무	2133-3600
	시 설 안 전 과 (건설업관리팀)	불법하도급 관련업무	2133-8730

※ 기타 상담 창구

- 불공정피해상담센터 : 서울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과(120 상담 예약)
- 서울시 마을변호사 : 생활 속 법률문제 방문상담(120 예약 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1층 방문) - 법률지원담당관 오정은(2133-6677)

## 임금체불 및 불법하도급 관련 유관기관

연번	분야	기관명	관계법규	연락처
1	건설	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(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1팀)	건설산업기본법	2133-3600
		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(건설안전과 건설업관리팀)	건설산업기본법	2133-8730
2	정보통신	서울시 정보통신담당관 공사업PC 관리팀	정보통신공사업법	2133-2897
3	소 방	등록소재지 소방서	소방시설공사업법	
4	전 기	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	전기공사업법	2133-3560
5	민 생	서울시 시민명예노동운동부즈만	* 임금체불 접수 및 상담(눈물그만)	<a href="http://economy.seoul.go.kr/tearstop">http://economy.seoul.go.kr/tearstop</a>
		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상생협력팀 (불공정 피해 상담센터)		2133-5559
		고용노동부 (임금체불신고센터)	근로기준법	1350